

2023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3년 4월 10일(월) 15:00

2. 장 소 : 화도관 대회의실

3. 대학평의위원회(12명)

■참석의원 : 정동훈, 권인철, 정용식, 이강훈, 유경선, 강성률, 천성오, 양근제, 김태현, 송영균 김민수, 반중혁 (12명)

4. 안 건

가. 2022학년도 결산(안)

나. [심의] 대학 학사구조 개편(안)

다. [심의] K-VISION 2030 대학발전계획 변경(안)

라. 규정 개정(안)

- 1) [심의]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 2) [심의]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3) 대학원 통합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 4) 대학원 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 개정(안)
- 5) 대학원 협동과정의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안)
- 6) 경영대학원 학사운영내규 개정(안)
- 7) 직제 규정 개정(안)
- 8) 교원인사 규정 개정(안)
- 9) 교원보수 규정 개정(안)
- 10)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 11) 교원 신규임용 내규 개정(안)
- 12) 교원 특별임용 내규 개정(안)
- 13)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 14) 교원 인사위원회 규정 개정(안)
- 15)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개정(안)

마. 2022회계연도 고정자산 변동(안)

5. 회의 내용 및 회의결과

정동훈 의장이 성원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하다.

- 총원 12명 중 12명 참석

정동훈 의장이 안건 진행 순서는 심의안건부터 진행함을 설명하다.

【대학 학사구조 개편(안)】

2) 대학 학사구조 개편(안)

- 김재요 처장(이하 '기획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가) 2023학년도 제1차 학사구조개편위원회 의결사항 적용하여 대학 학사구조를 개편하고자 함
 - 나) 교육부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기본계획에 기반한 대학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단과대학 및 학과 구축하고자 함
 - 다) 2024학년도 첨단학과 신설에 따른 대학 학사구조 개편 관련 교육부 승인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미승인 시의 고려사항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가) 평생교육 단과대학/학과 신설(안)
 - 나)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명칭 변경 및 로봇학부 이전
- 의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유경선 의원이 정원 내 1명이 있는 학과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기존에는 정원 내 1명 이상을 필수로 두어야 했지만,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입학정원을 배정하지 않고 정원 외 전담학과 모집이 가능함을 설명하다.
- 의장이 정보콘텐츠학과와 자산관리학과에서 이의제기가 있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평생교육체제사업 추진위원으로 해당 학과 교수가 참여하여 관련 학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학사구조개편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어 이의제기는 없었음을 답하다.
- 정용식 의원이 신설학과 2024학년도 정원이 16명인 사유와 특성화고 졸업자만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4개 학과 각 30명씩 모집을 지향하나, 대학입학전형 2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변경은 학사구조 개편 등에 따른 전형 내의 정원조정만 가능함을 설명하다. 이에 2025학년도 정원의 경우, 정원외 농어촌 전형의 28명을 개설학과 정원으로 포함하여 학사구조 개편안을 제안하였음을 부연하다.
- 또한 기획처장이 특성화고 졸업한 재직자 전형만 운영이 가능한 모집대상임을 설명하다. 평생교육사업 유형이 일반형과 특성화고로 구분되나, 사업의 제한사항으로 수도권은 특성화고 졸업한 재직자 전형만 가능함을 부연하다.

- 김태헌 의원이 기존 재학생들이 학과명 변경으로 전공수업 트랙 등이 바뀌게 되어 불이익이 없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기존 학과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며 폐지 후 신설되는 것으로 전공 인정, 재수강 과목 개설 등에 대한 사항까지 고려함을 설명하다.
- 의장이 현재 2개 학과에 재학생들이 학과명이 변경되어 받게 되는 피해가 없도록 잘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다.
- 권인철 의원이 학과 폐지에도 불구하고 2개 학과에 정원 내 1명씩 모집인원을 유지하는 이유를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LiFE 2.0)은 고도화형과 구축형이 있고, 고도화형은 기존 운영학과의 발전형이며, 재직자 전형을 처음 신설하는 학과는 구축형에 해당함을 설명하다. 우리 대학은 두 유형이 가능하나, 고도화형은 기존 사업을 운영한 대학과 경쟁하므로 실적에서 불리할 수 있어 사업 수주를 위한 전략으로 구축형을 선택하였음을 부연하다.
- 또한 사업 수주에 정원 내 정원이 있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사업기간(2024~25년) 이후 2026학년도에 정원 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논의됨을 설명하다.
- 권인철 의원이 정원 내 정원(1명)이 매년 채워지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매년 3~4명 지원이 있고 정원이 채워져 운영함을 답하다.
- 김태헌 의원이 기존 재학생들에게 학과 폐지에 대하여 사전 논의 또는 안내를 진행하였는지와 학과 폐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관련 사항으로 인하여 해당 학과 전임교원이 학사구조 개편에 참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학과 폐지는 학과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견수렴 과정이 선행되었음을 교무처장에게 즉석에서 유선 확인하여 전달하다. 특히 재학생이 재직자들이므로 학과명, 학위명에 대한 사항이 중요하여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였음을 부연하다.
- 송영균 의원이 단과대학명 변경 시 장학금 지원 등 어떤 혜택사항이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1주기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 진행 경과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차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도화된 특화 모델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분야를 반영하여 단과대학을 신설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송영균 의원이 인공지능 위주로 개편되는 경우, 기존 타 학과들도 인공지능 관련 분야의 수업 트랙을 따라가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인공지능 부분의 확대된 세부 전공명 변경 및 교양과목에 대한 필수과목도 소프트웨어에서 인공지능 분야로 강화되는 것을 설명하다.
- 송영균 의원이 단과대학명칭 변경에 체감하기 힘들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데,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나 동의 절차가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내부적으로 학부 및 대학원도 인공지능 분야

- 로 집중하여 특화된 모델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의장이 세부 안건별로 찬반 의사를 묻고, 각 의원들이 거수로 찬반의사를 표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 평생교육 단과대학/학과 신설(안) : 출석의원 12명 중 12명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명칭 변경 및 로봇학부 이전 : 출석의원 12명 중 11명 찬성, 1명 반대로 원안대로 가결
 - 첨단학과 승인여부에 따른 로봇학부 세부전공명 변경(안) : 출석의원 12명 중 12명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 의장이 대학 학사구조 개편(안) 세부 3건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K-VISION 2030 대학발전계획 변경(안)]

3) K-VISION 2030 대학발전계획 변경(안)

- 기획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교육부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LiFE 2.0) 추진 관련 대학발전 계획 연계
- 주요 내용
 - K-VISION2030 대학발전계획 체계도 하위항목으로 '평생교육 발전계획' 반영
- 의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김태헌 의원이 발전계획서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및 파급력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평생교육 분야는 교육부 중점 추진 분야로 학부정원을 평생교육정으로 전환 등에 대한 교육부 인센티브가 있으며 약 연10억원이상 사업비가 지원됨을 설명하다. 사업비의 과소를 떠나 대학발전을 위한 비전, 학교의 중장기 목표 및 전략, 사업연계 등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현될 로드맵과 실적 관리가 잘 피력됨이 사업 수주를 위하여 필요함을 설명하다.
- 김태헌 의원이 평생교육은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야는 아니므로 우려하다. 이에 공감할만한 세부내용 추가가 필요함을 개진하다.
- 기획처장이 평생교육이라는 큰 수요가 당장 체감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에 동감하고, 고등교육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미래를 대비한 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한 준비과정의 시작점이므로 이에 양해를 구하며, 발전계획 일부만 발췌하여 제시하였으나 현재 세부화된 많은 발전계획사업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추가 설명하다.
- 천성오 의원이 사업 수주 시, 사업비 활용계획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사업비는 학과나 단과대학 운영을 위해서 강사료, 인건비, 운영비 등 기반 구축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다.
- 송영균 의원이 사업 수주 시 직제에 반영되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사업선정 시, 의무적으로 사업이 요구하는 기구 신설 및 직제 반영은 필수 사항이며, 사업이 선정되지 않을 때는 단과대학 및 학과 만드는 단계까지 진행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 의장이 안건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고, 각 의원들이 거수로 찬반의사를 표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 K-VISION 2030 대학발전계획 변경(안) : 출석의원 12명 중 12명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 의장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규정 개정(안)】

4)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 정석재 처장(이하 '교무처장')이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한 사항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 가) 2023학년도 제1차 정원조정심의위원회 의결된 사항 적용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단과대학 명칭 변경 및 참빛인재대학 신설
 - 로봇학부, 지능형로봇학과 소속 단과대학 변경
 - 참빛인재대학 신설에 따른 학과 개편 및 입학정원 확정
 - 2025학년도 정원 외 입학정원 확정
 - 첨단학과 관련 학칙 개정
 - 나) 교육부의 2024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승인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향후 교육부 승인사항에 대한 후속 행정조치로 학칙 개정(안)을 상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가) 교육부 첨단학과 승인 여부에 따라 승인 시 개정(안)과 미승인 시 개정(안)으로 구분
 - 제2조(교육조직) 단과대학 명칭변경 및 신설
 - 제3조(학과(학부)의 편제와 입학정원) ①항, ②항 개정
 - [별표 1] 학과(부)별 입학정원 및 수여학위종별표 개정
 - [별표 2] 학과(부)별 수여학위종 별표 삭제에 따른 제65조(학위수여) 개정
 - 부칙 신설
- 의장이 제1차 기획관리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이 된 사유를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조건부 의결은 첨단학과 교육부 승인받은 것에 학칙 개정(안)의 조건부 의결요청임을 설명하다.

- 교무처장이 상기 관련하여 추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학생정원조정심의위원회도 지난번 2022년 12월에 첨단학과가 만들어지게 되면, 한 학과와 전공이 만들어져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의결되었는데, 현재 조건부로 의결을 요청하는 이유가 첨단학과 승인 여부가 4월 말로 연기되었기 때문임을 설명하다. 아울러 첨단학과 승인과 미승인에 따라 모집정원이 달라짐을 설명하다.
- 김태현 의원이 참빛인재대학 자산관리학과 및 정보콘텐츠학과명에 야간 표시 '(야)'가 삭제된 사유를 질의하다.
- 교무처장이 기존 2개 학과에 대하여 대교협에 질의한 결과, 학과 운영형태에 따라 문제없음을 확인하였음을 설명하다. 아울러 학내 내외부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김태현 의원이 게임콘텐츠학과 졸업 시, 이학사 학위 수여 사유를 질의하다.
- 교무처장이 학부는 다양한 학위종을 쓸 수 있지만, 이 학생들은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므로 해당 학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이었으며, 콘텐츠 분야는 교육부에서 이학사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학과인 정보콘텐츠학과 교수진과 협의하여 이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으로 결정했음을 설명하다.
- 의장이 학과명에 야간 표시 '(야)'가 시스템 상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나 그게 아니라면 향후 논의에서 해당사항을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교무처장이 편제에서 야간학과 표시를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후속작업은 해당 부처들의 협의 후에 진행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 의장이 안건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고, 각 의원들이 거수로 찬반의사를 표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 출석의원 12명 중 12명 찬성
- 의장이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1) 「첨단학과 미승인 시, 학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 2) 「첨단학과 승인 시,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

5)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김양래 대학원 교학부장(이하 '교학부장'), 노진서 원장(이하 '스마트융합대학원장'), 심상렬 원장(이하 '경영대학원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각각 설명하다.
- 제안이유
 - 가) 스마트융합대학원 학과 명칭 변경과 전공 명칭 변경
 - 스마트시스템학과 학과 명칭 변경과 전공 명칭 변경 및 폐지

- 바이오헬스융합학과 전공 폐지 및 신설
- 나) 경영대학원 국방기술경영학과에 대한 교육부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에 따라 학과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 다)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자기경영컨설팅전공 및 서비스경영학과 전공명 변경
- 라) 일반대학원 원격수업 기반 재직자 우대 석사과정 신설
 - 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피플어널리틱스학과) 학과 신설
 - 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AI융합산업학과) 학과 신설
- 주요 내용
 - 가) 제4조(대학원의 과정) 6항 신설
 - 대학원에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학위과정을 둘 수 있도록 조항 신설
 - 나) 제5조(설치학과 및 학생정원) 개정
 - 다) 제8조(학기, 수업 등) 일반대학원의 수업 관련 단서 조항 신설
 - 학과간협동과정 내 원격기반으로 신설되는 학과의 수업 관련 조항 추가
 - 일반대학원 원격기반 학과의 학생의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관련사항 추가
 - 라) 제15조의 2(학과 및 전공변경) 개정
 - 일반대학원 원격기반 학과 관련 학과 변경 관련 조항 신설
 - 마) 제27조(자격시험) 일반대학원 원격기반 학과 관련 추가
 - 바) 제32조(학위청구논문 등) 개정
 - 일반대학원 정원외 외국인 학생(석사과정) 및 원격기반 학과 학생(석사과정)에 한해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관련 조항 신설
 - 사) 제44조(학위종별) 개정
 - 아) [별표1] 일반대학원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개정
 - 자) [별표2] 특수대학원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개정
- 의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정용식 의원이 일반대학원 원격수업 기반 재직자 우대 석사과정에 일반 학·석사연계과정을 고려하는지 질의하다.
- 교학부장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다.
- 정용식 의원이 문구상 일반대학원 학생들까지 마치 포함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규정 개정이 필요하지않는지 질의하다.
- 김태훈 직원(대학원 교학팀)이 별도 규정에서 자격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선발하지 않음을 부연하다.
- 강성률 의원이 제안된 학과명이 낯선 단어(명칭), 인지도나 좁은 범용성, 다양한 한글표기 등을 고려할 때, 학과명과 전공명이 잘 이해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의장이 대학원 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는지 질의하다.
- 교학부장이 대학원운영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고, 신청

한 학과의 의견을 충분히 고민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설명하다.

- 권인철 의원이 제4조(대학원의 과정) 조항은 대학원 개설 전체 유형의 모든 과정을 요약하는 과정이고, 제8조의 원격기반 학과는 제4조 대학원의 과정 유형에 포함되는 않는 사항으로, 제4조 6항을 신설하면서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온라인 교육과정(온라인 학위과정, 원격기반 학위과정 등)을 모두 기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다.
- 교학부장이 처음에는 별도 규정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학위과정과 관련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면 세부 규정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대학원운영위원회나 대학원위원회를 거치면서 기존의 학칙에 잘 녹여내는 내용으로 제안하였음을 설명하다.
- 경영대학원장이 교육부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의 경우에는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다 둘 수 있음을 부연하다.
- 의장이 4조와 8조의 규정이 상충되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교육부 온라인학위과정은 100% 온라인수업을 의미함을 답하다.
- 의장이 용어의 통일 또는 정리에 대한 보충 여부를 묻고 심의에 부칠 것을 제안하다.
- 김민수 의원이 용어 정리는 향후에도 필요함을 의견 개진하다.
- 경영대학원장이 교육부 원격수업 훈령 따라 온라인 학위과정에 대한 사항을 승인받은 사항이라 교육부에서도 해당 사항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후 다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을 설명하다.
- 의장이 추후 이 부분은 다시 대학원에서 향후 논의를 거쳐 반영할 것을 자문하다.
- 교학부장이 원격교육과 온라인 교육과정 등의 용어가 교육부 내에서도 혼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시작을 하려는 부분이 강하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첨언하다.
- 의장이 기획관리위원회 및 대학원 위원회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었고, 용어상의 혼돈은 교학부장도 언급하였듯이 우리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므로 이 부분을 의원들이 고려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하다.
- 의장이 안건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고, 각 의원들이 거수로 찬반의사를 표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 거수 (찬성) 9명
 - 미거수(반대/포기) 3명
- 의장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6) 대학원 통합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 대학원 교학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원격수업 기반 재직자 우대 석사과정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 주요 내용
 - 제5조(지원서류) 1항에 이력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사항 자구 수정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7) 대학원 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 개정(안)

- 대학원 교학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가) 원격수업 기반 재직자 우대 석사과정 신설에 따른 관련 개정
- 주요 내용
 - 가) 제2조(학위수여자격) 개정
 - 일반대학원 원격기반 학과의 관련 규정 준용에 대한 사항 추가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8) 대학원 협동과정의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안)

- 대학원 교학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가) 원격수업 기반 재직자 우대 석사과정 신설에 따른 관련 개정
- 주요 내용
 - 가) 제4조(학과 설치)에 학과간 협동과정으로 원격기반 석사학위과정 설치 관련 2항 신설
 - 나) 제6조(교과목 개설)에 원격기반 학과 개설 교과목 관련 사항신설
 - 다) 제7조(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원격기반 학과 재학생 학위수여 자격 신설
 - 라) 제10조(학과 폐지·존속)에 자구 추가 및 원격기반 학과 폐지기준 신설
 - 마) 제11조(원격기반 학과의 학생 선발) 신설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9) 경영대학원 학사운영내규 개정(안)

- 경영대학원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가) 경영대학원 국방기술경영학과에 대한 교육부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에 따라 학과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 나) 2023학년도 1학기 준비를 거쳐 2023학년도 2학기부터 국방기술경영학과와 온라인 학위과정 전면 시행 예정에 따라 온라인 학위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

- 주요 내용
 - 가) 제9장 온라인 학위과정 : 장 신설
 - 제54조(학과 및 전공 신설)
 - 제55조(입학정원)
 - 제56조(학과)
 - 제57조(수업)
 - 제58조(온라인 학과 및 전공 변경)
 - 제59조(취득학점 인정)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2022학년도 결산(안)】

1) 2022학년도 결산(안)

- 김문귀 팀장(재무팀장)이 2022학년도 결산(안)과 관련하여 수입현황 및 전년 대비 수입 증감현황, 지출현황 및 전년 대비 지출 증감현황을 중심으로 설명하다.
- 반중혁 의원이 산학협력단과 대학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지 질의하다.
- 재무팀장이 분리되어 있다고 답하다.
- 반중혁 의원이 산학협력단의 수입 내역에 대해 질의하다.
- 재무팀장이 산학협력단 대학 전출금으로 교내연구비 집행 등임을 설명하다.
- 이강훈 의원이 기금 15억원 감소가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를 질의하다.
- 재무팀장이 대출상환 20억원을 계산하면 15억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기운영 차액은 5억원 정도는 남았음을 설명하다.
- 의장이 법인전입금이 내역이 맞는지 질의하다.
- 재무팀장이 맞다고 답하다.
- 의장이 법인전입금에 대하여 의견을 전달할 것을 제안하다.

【규정 개정(안)】

10) 직제 규정 개정(안)

- 이상주 팀장(이하 '교학팀장')이 기관명칭 변경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그 외 직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성진호 팀장(이하 '평가감사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가) 대학 학사구조 개편(안)에 따라 단과대학 신설 및 변경

나) 교무처 '학생서비스센터' 직제 삭제

다) **[재상정]** 부속교육기관 '정보과학교육원' 직제명칭 변경

-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및 홍보계획 확정 단계

- 법인이사회 요청(기관명칭 변경에 대한 배경 설명)에 대한 설명(제안) 진행

※ 별첨. 기관명칭 변경에 대한 배경설명 자료

라) 기타기관 '벤처스타트업아카데미사업단' 신설

▪ 주요 내용

가) 제3조(기구) 기구표 및 [별표 1] 개정

나) 제15조의2(교무처의 조직)

다) 제36조(정보과학교육원장), 제36조의2(정보과학교육원의 조직) 변경

라) 제16절 벤처스타트업아카데미사업단 신설, 제45조 및 제45조의2 신설

▪ 의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의장이 기관명의 한글명과 영문명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질의하다.

▪ 정보과학교육원장이 브랜드명을 특허 출원 신청할 예정이므로 해당 범주 내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가 있음을 설명하다. 향후 대학에서 직제의 영문명은 미래지식교육원을 그대로 영문으로 옮겨 사용할 예정임을 부연하다. 영문명은 사실 잘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설명하다.

▪ 교학팀장이 특허출원이 상표명으로 "COITECH"으로 등록될 예정이며, 첨부 설명자료의 상정배경 및 절차 등에 따라 확정되었음을 설명하다. 향후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명칭 변경 신고 및 특허출원 시 10년간 권리 유지, 갱신이 가능함을 부연하다.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본건을 자문대로 안건을 종결하다.

11) 교원인사 규정 개정(안)

▪ 교무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가) 교원 특별임용 내규 전면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나) 연봉제 전임교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 근거 마련

다) 사문화 조항 삭제

▪ 주요 내용

가) 제10조(신규임용)

나) 제14조(직급 등)

다) [별표 1] 1. 승진 및 재임용, 승급 심사기준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12) 교원보수 규정 개정(안)

- 교무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승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승급일 변경 필요
- 주요 내용
 - 제16조(승급의 제한)에 2항 승급제한 사유에 해당자의 차기 승급일 명확화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13)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무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사문화 조항 삭제를 위한 개정
- 주요 내용
 - 제14조(절차)에서 교육부 보고 절차 삭제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14) 교원 신규임용 내규 개정(안)

- 교무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교원 특별임용 내규 전면 개정(교원 특별채용 내규)에 따른 후속 개정
- 주요 내용
 - 제3조(임용원칙) 및 제4조(임용시기) 에서 용어 변경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15) 교원 특별임용 내규 개정(안)

- 교무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가) 정부의 정책 변경 및 학생 인원 변동 등 단기 예측이 어려운 대학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전임교원 특별임용 체계 보완 필요
 - 나) 대학 발전을 위한 필요 인력을 적기에 충원할 수 있는 유연한 임용 제도 필요
- 주요 내용
 - 가) 규정 전면 개정 및 규정명 변경

- 교원 특별임용 내규 → 교원 특별채용 내규

나) 자격 요건 변경

다) 교원 특별채용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라) 교원 특별채용위원회 기능 변경

마) 총장 면담 절차 삭제

- 의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의장이 교원 특별채용은 좋은 제도이고 도입 취지에 공감하나, 특별채용 시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특별채용위원회 절차가 있으나, 추천 및 위원회의 구성을 고려할 때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내규 전면 개정(안)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
- 교무처장이 특임교수 채용과 달리 상정된 규정은 전임교원을 채용하는 규정임을 설명하다. 채용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을 부연하며 '학과'에서 2조(자격)의 어떤 요건으로 요청이 접수되더라도 특별채용절차 진행 여부는 반드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므로 공정성 있게 진행됨을 부연하다. 전임교원 확보율을 고려하여 정기 채용을 우선 진행하지만, 채용과정에서 뽑지 못했을 경우 정기 채용과정을 다시 거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필요함을 설명하다.
- 의장이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은 대학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정보통신처장, 산학협력단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4명의 교원임을 설명하고 50% 이상은 당연직임을 설명하다.
- 교무처장이 교수평의회에서 2명을 추천함을 부연하다.
- 강성률 의원이 학과(부) 합의 외에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원인사위원회에 교평이 추천하는 1명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다. 또한 기획관리위원회에서 '기관'에서는 채용할 수 없는 것으로 수정하였음을 설명하다.
- 교무처장이 학교에서 전임교원을 채용하는 절차는 투명함을 설명하고, 학과(부)의 동의된 회의록에 의해 진행되는 것임을 부연하다. 교무처장이 학부에서 합의하여 도출된다면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치므로 다른 방법, 직위를 남용하여 채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설명하다. 따라서 채용 절차상 학과(부)의 동의를 전제로 Bottom-up하게 된 것은 학부 전체 교수님들의 동의가 없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부연하다.
- 강성률 의원이 특수대학원은 (일반)전임교원이 없고 특별전임만 있는데 이 규정에 적용되는 지를 질의하다.
- 교무처장이 일반전임과 특별전임교원이 모두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답하다. 아울러 최초 대학(원)장 외에 기관장도 추천자 대상이었으나 기획관리위원회에서 공정성을 위해 기관장을 제외할 것을 제안하여 삭제 처리하였고, 내규 2조 1항 3호의 "대학발전 계획 또는 특성화 계획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는 첨단학과 등 교육사업 및 정책 등에 따라 학과를

신설할 때를 첨단 분야의 교원을 채용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므로 이런 경우에 필요함을 부연하다.

- 유경선 의원이 교원채용 후 심사위원 등 자료를 공개하는지 질의하다.
- 교무처장이 공개한다라고 답하다.
- 유경선 의원이 교원이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인 상황에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줄이도록 어떤 절차와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뽑았는지 등을 기입한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의 노력과 성의가 필요함을 제안하다.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본건을 자문대로 안건을 종결하다.

16)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무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가) 외국인 특별전임교원의 공개채용 방법 및 절차 명시
 - 나) SCI(급) 논문 게재, 학내 교수 간 공동연구 등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임용기간 보장
- 주요 내용
 - 가) 제7조(임용계약)에서 자구 및 임용기간 변경
 - 나) 제8조(신규임용) 절차와 방법 개정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17) 교원 인사위원회 규정 개정(안)

- 교무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가) 간사 임명 및 회의 성립 요건 등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상 요건과 충돌 조항 개정
- 주요 내용
 - 가) 제2조(구성)에서 위원회 간사 추가 임명
 - 나) 3조(회의)에서 회의성립 요건 변경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18)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개정(안)

- 김은주 과장(이하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과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72호「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개정에 따라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11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에서 학사과정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변경
⇒ 월 1,200,000원에서 월 1,300,000원으로 변경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19) 2022회계연도 고정자산 변동(안)

- 김성호 팀장(이하 '시설관재팀장')이 고정자산 변동(안)과 관련하여 토지, 건축, 구축물, 기계기구, 집기비품 등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의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권인철 의원이 고정자산 보고는 분리하지 말고 결산보고에서 통합 보고할 것을 제안하다.
- 시설관재팀장이 재무팀에 수입 처리하고 결산에 반영된다고 답하다.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본건을 자문대로 안건을 종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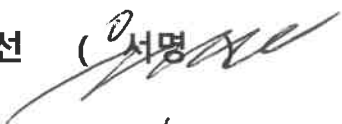






6. 폐회

의장이 상정된 안건 심의와 자문을 마친 후 폐회를 선언하다.

붙 임 : 회의자료 1부. 끝.

2023년 4월 10일

이상의 회의 내용을 확인함.

의 장	정 동 훈	(서명) 
부 의 장	권 인 철	(서명) 
평 의 원	정 용 식	(서명) 
평 의 원	이 강 훈	(서명) 
평 의 원	유 경 선	(서명) 
평 의 원	강 성 를	(서명) 
평 의 원	천 성 오	(서명) 
평 의 원	양 근 제	(서명) 
평 의 원	김 태 헌	(서명) 
평 의 원	송 영 균	(서명) 
평 의 원	김 민 수	(서명) 
평 의 원	반 중 혁	(서명) 